

「(평택해양경찰서)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」
일부개정(안)

2026. 8.

평택해양경찰서

1. 개정이유

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안전사고 예방, 레저 활동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적정성 검토
- 나.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협조 요청에 따른 용어 정비
- 다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(조력발전 수문 인근 해상) 범위 확대
- 라. 지정 해수욕장 실제 공식 명칭과의 불일치 정비
- 마. 비지정 해수욕장 지정유지 및 명칭·범위기준·금지기간 변경
- 바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표준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0조제1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별첨, 신·구조문대비표

(평택해양경찰서)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

일부개정(안)

(평택해양경찰서)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

연번	장 소	금 지 구 역	금 지 대 상	금 지 기 간															
1	시화호 안쪽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해상	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길이 1,700m, 폭 700m 해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<table><tr><th>기점</th><th>위도</th><th>경도</th></tr><tr><td>1</td><td>37-18-33.46 N</td><td>126-36-28.09 E</td></tr><tr><td>2</td><td>37-18-13.70 N</td><td>126-36-42.04 E</td></tr><tr><td>3</td><td>37-18-40.89 N</td><td>126-37-42.24 E</td></tr><tr><td>4</td><td>37-18-56.99 N</td><td>126-37-30.59 E</td></tr></table>	기점	위도	경도	1	37-18-33.46 N	126-36-28.09 E	2	37-18-13.70 N	126-36-42.04 E	3	37-18-40.89 N	126-37-42.24 E	4	37-18-56.99 N	126-37-30.59 E	모든 수상레저기구	연중
기점	위도	경도																	
1	37-18-33.46 N	126-36-28.09 E																	
2	37-18-13.70 N	126-36-42.04 E																	
3	37-18-40.89 N	126-37-42.24 E																	
4	37-18-56.99 N	126-37-30.59 E																	
2	시화호 안쪽 배수갑문 인근 해상	시화호 배수갑문 인근 길이 300m, 폭 400m 해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 <table><tr><th>기점</th><th>위도</th><th>경도</th></tr><tr><td>1</td><td>37-17-30.10 N</td><td>126-35-00.30 E</td></tr><tr><td>2</td><td>37-17-39.10 N</td><td>126-34-50.50 E</td></tr></table> ※ 배수갑문: 방조제 안의 물을 바다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한 갑문	기점	위도	경도	1	37-17-30.10 N	126-35-00.30 E	2	37-17-39.10 N	126-34-50.50 E	모든 수상레저기구	연중						
기점	위도	경도																	
1	37-17-30.10 N	126-35-00.30 E																	
2	37-17-39.10 N	126-34-50.50 E																	
3	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해변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이내 구역 단,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을 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7. 1. ~ 8. 31.															
4	경기 화성특례시 만세구 서신면 제부도 해변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이내 구역 단,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을 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7. 1. ~ 8. 31.															
5	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해수욕장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이내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															
6	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섬 해수욕장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이내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															

제2호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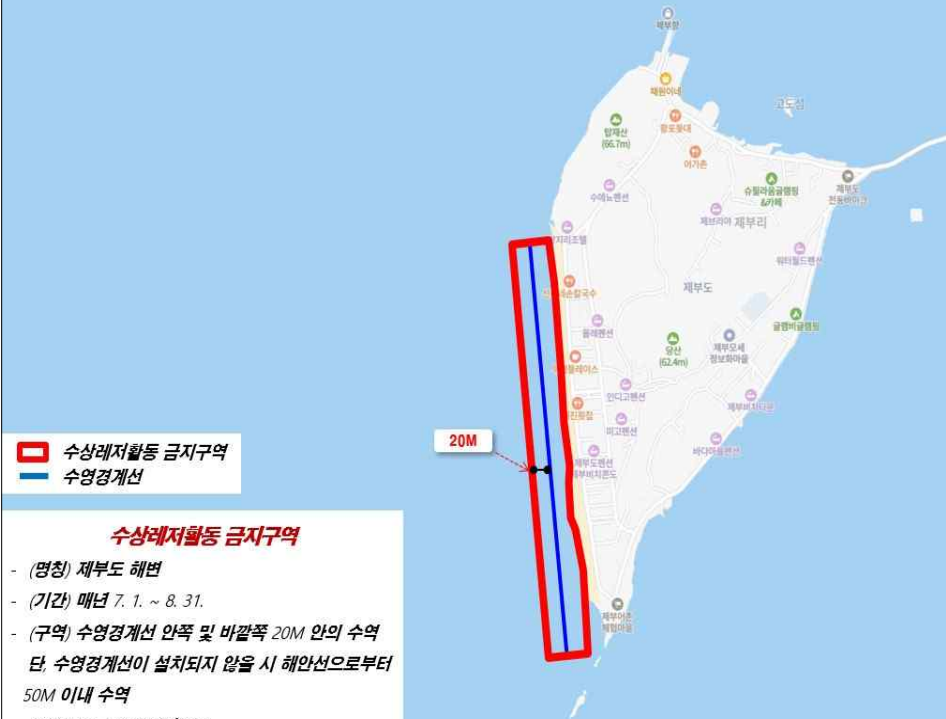
제3호 중 “2021년도”를 “2027년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]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

연번	명칭	금지구역도
1	○ 시화호 안쪽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해상	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- (명칭) 시화호 안쪽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해상 - (기간) 연중 - (구역)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길이 1,700m, 폭 700m 해상 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① 37-18-33.46N, 126-36-28.09E ② 37-18-13.70N, 126-36-42.04E ③ 37-18-40.89N, 126-37-42.24E ④ 37-18-56.99N, 126-37-30.59E - (대상) 모든 수상레저기구
2	○ 시화호 안쪽 배수갑문 인근 해상	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- (명칭) 시화호 안쪽 배수갑문 인근 해상 - (기간) 연중 - (구역) 조력발전소 배수갑문 인근 길이 300m, 폭 400m 해상 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① 37-18-30.10N, 126-35-00.30E ② 37-17-39.10N, 126-34-50.50E - (대상) 모든 수상레저기구

연번	명칭	금지구역도
3	○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해변	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영경계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- (명칭) 방아머리 해변 - (기간) 매년 7. 1. ~ 8. 31. - (구역)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20M 안의 구역 단,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을 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 - (대상) 모든 수상레저기구
4	○ 경기 화성특례시 만세구 서신면 제부도 해변	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영경계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- (명칭) 제부도 해변 - (기간) 매년 7. 1. ~ 8. 31. - (구역)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20M 안의 구역 단,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을 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 - (대상) 모든 수상레저기구

연번	명칭	금지구역도
5	○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해수욕장	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- (명칭) 왜목마을 해수욕장 - (기간)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- (구역)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20M 안의 수역 - (대상) 모든 수상레저기구
6	○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섬 해수욕장	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- (명칭) 난지섬 해수욕장 - (기간)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- (구역)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20M 안의 수역 - (대상) 모든 수상레저기구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														
1.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					1.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																		
연번	장 소	금 지 구 역	금 지 대 상	금 지 기 간	연번	장 소	금 지 구 역	금 지 대 상	금 지 기 간														
1	시화호 안쪽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해상	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길이 1,200m, 폭 600m 해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연중	1	시화호 안쪽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해상	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길이 1,700m, 폭 700m 해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연중														
		<table><tr><th>기점</th><th>위도</th><th>경도</th></tr><tr><td>1</td><td>37-18-33.46 N</td><td>126-36-28.09 E</td></tr><tr><td>2</td><td>37-18-16.47 N</td><td>126-36-40.00 E</td></tr><tr><td>3</td><td>37-18-35.70 N</td><td>126-37-22.37 E</td></tr><tr><td>4</td><td>37-18-52.69 N</td><td>126-37-10.47 E</td></tr></table>					기점			위도	경도	1	37-18-33.46 N	126-36-28.09 E	2	37-18-16.47 N	126-36-40.00 E	3	37-18-35.70 N	126-37-22.37 E	4	37-18-52.69 N	126-37-10.47 E
		기점					위도			경도													
		1					37-18-33.46 N			126-36-28.09 E													
		2					37-18-16.47 N			126-36-40.00 E													
3	37-18-35.70 N	126-37-22.37 E																					
4	37-18-52.69 N	126-37-10.47 E																					
2	시화호 안쪽 배수갑문 인근 해상	시화호 배수갑문 인근 길이 300m, 폭 400m 해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연중	2	시화호 안쪽 배수갑문 인근 해상	시화호 배수갑문 인근 길이 300m, 폭 400m 해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연중														
		<table><tr><th>기점</th><th>위도</th><th>경도</th></tr><tr><td>1</td><td>37-17-30.10 N</td><td>126-35-00.30 E</td></tr><tr><td>2</td><td>37-17-39.10 N</td><td>126-34-50.50 E</td></tr></table>					기점			위도	경도	1	37-17-30.10 N	126-35-00.30 E	2	37-17-39.10 N	126-34-50.50 E						
		기점					위도			경도													
		1					37-17-30.10 N			126-35-00.30 E													
		2					37-17-39.10 N			126-34-50.50 E													
3	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어머리 해수욕장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안의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	3	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어머리 해변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이내 구역 단,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을 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7. 1. ~ 8. 31.														
4	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수욕장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안의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	4	경기 화성특례시 안세구 서신면 제부도 해변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이내 구역 단,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을 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7. 1. ~ 8. 31.														
5	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 해수욕장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안의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	5	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해수욕장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이내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														
6	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해수욕장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안의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	6	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섬 해수욕장	수영경계선 안쪽 구역 및 바깥쪽 20m 이내 구역	모든 수상레저기구	해수욕장 개장기간														

2. 과태료: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					2. ----- ----- ----- ----- 따라 ----- ----- -----.				
--	--	--	--	--	---	--	--	--	--

3. 재검토 기한: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<u>2021</u> <u>년도</u>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</u> <u>년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